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88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김태년 · 진성준 · 박용갑
김영환 · 홍기원 · 박홍배
김우영 · 박민규 · 윤종균
김 현 · 정준호 · 이광희
김영진 · 이주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인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그런데 부모의 불법체류 중 태어난 자녀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강제퇴거의 대상임. 현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 정책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이 고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퇴거시킬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체류·정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하였거나 어린 시절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 여부와 무관히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 등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성년자에게 제10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6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외국인

나. 7세 이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7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외국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다만,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라.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력 요건을 충족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또는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출생하였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4(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 등에 대한 특례)</u> <u>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성년자에게 제10조의2에 따른 체류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u> <u>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6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외국인</u> <u>나. 7세 이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7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외국인</u> <u>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u>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다만,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라.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력 요건을 충족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또는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